

대전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4가합10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환

피고1. B 영농조합법인

2. C종친회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변론 종결2018. 11. 14.

판결 선고2018. 11.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2. 2. 3. 접수 제164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종친회는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2. 1. 6. 접수 제301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들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종친회는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6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E는 처 F와 사이에 G, H, 피고 D, 원고 A, I 등 5남매를 두었다. 망 E는 2011. 11.경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2012. 1.경 위암 수술을 하여 2012. 1. 9.부터 2012. 1. 20.까지 충남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8. 21.부터 충남대학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9. 17. 사망하였다.

나. 망 E는 1998. 10. 21. 별지 목록 부동산 1, 2, 3의 1/2지분(이하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1, 2, 3'이라 칭하고, 이 사건 부동산 1, 2, 3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1998.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2. 2. 3. 망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에 관하여 2012.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고 한다)는 2012. 1. 6. 망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2, 3에 관하여 2012.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3. 25. 망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피고 종친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망 E가 위암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피고 종친회와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망 E가 피고 D에게 상속세 등을 내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 위해 내세운 실체가 없는 허위 단체이다. 피고 종친회 및 피고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실소유주가 피고 D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 종친회는 적법한 종중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2, 3을 취득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를 한 위 피고들은 공유자인 한 사람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참조),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나) 망 E의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법무사 J에게 직접 위임한 사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에 날인된 망 E의 인영은 망 E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망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에 직접 무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 E는 위암의 질환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의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등기 또한 망 E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허위의 설립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D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원고가 애초 망 E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건네주면서 승낙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8호증, 제4면 참조)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점, ②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E를 대표이사로, 원고와 H, K을 각 이사, 망 E를 감사로 하여 2012. 1. 18. 설립절차를 완료한 후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L사무소에서 2012년 제780호로 설립절차가 기재된 의사록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공증을 받았는데(을 제2호증의 4, 제5면 참고),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참석자로서 피고 영농조합법인 설립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위 공정증서도 불법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원고는 망 E가 상속세 등을 탈루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해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종친회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소유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 종친회 소유재산도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 D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종친회는 공동시조인 M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2, 3에 공동시조인 M의 묘지를 두고 이를 관리하고 있고, 종친회 규약을 제·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유한 의미의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원고는 피고 종친회의 공동시조가 망 E이므로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종중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친회의 회원은 "M 자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종친회의 명칭 중 망 E의 아호라고 볼 수 있는 'N'이라는 기재가 들어간 사실만으로 망 E가 공동선조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망 E와 피고 D이 금융종합과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 종친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 E나 피고 D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는 자료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 종친회 명의 계좌의 돈이 실제로는 망 E 개인의 돈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나 피고 종친회가 실체가 없는 단체라거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통정허위표시로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종친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적법한 결의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종친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건, 종중 유사 단체라고 보건, 이 사건 부동산 2, 3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총유 재산에 속하므로, 먼저 규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 종친회의 규약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12. 1. 3. 피고 종친회가 이 사건 부동산 2, 3 취득에 대해 찬성하는 결의를 하고,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7호증 참고). 한편, 등기가 되면 실체법상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 종친회의 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종친회와 피고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E는 상속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차명 거래와 현금을 쪼개어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였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망 E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관리·보전행위로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 E가 차명계좌를 통해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망 E가 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E가 피고들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들에게 귀속된 금융자산은 망 E의 상속재산으로 유류분청구의 반환대상이고, 피고들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종친회와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26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1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인데(민법 제113조 제1항), 원고가 2012. 3. 25.

망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의 부탁에 따라 피고 D이 2013. 8. 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스스로 2018. 1. 16.자 준비서면 제22면에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달리 망 E가 피고 종친회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 E의 생전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망 E의 사망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망 E의 생전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어느 정도의 부족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종친회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 E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금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E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일부 청구로서 5,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정한

판사박철홍

판사신옥영

별지